

대학경쟁력강화를위한학과정원조정및신설·통폐합·변경·폐지규정 5-1-26

규정번호 5-1-26
제정일자 2016.1.12
최근개정 2026.3.23
개정차수 12차 개정
관리부서 기획평가팀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목적) 이 규정은 우리대학 학과의 정원조정을 위한 기본 원칙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정의) ① “모집단위”라 함은 학칙 제4조에 의한 설치학과 및 입학정원을 말한다.

②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학과정원조정 및 신설·통폐합·변경·폐지(이하 ‘정원조정’ 이라 한다.)”라 함은 대학교육의 수요 변화와 대학입학 학령인구의 감소 등의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우리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정원조정을 말한다.(개정 2025.3.31.)

③ “모집단위 신설”이라 함은 새로운 학과의 신설 또는 해당 학과의 교육과정이 50% 이상 변경되는 경우를 말한다.

④ “모집단위 통폐합”이라 함은 2개 이상의 학과를 통폐합하여 새로운 학과를 신설하거나 기존 학과로 병합하는 경우를 말한다.(항 신설 2017.10.25.)

⑤ “모집단위 변경”이라 함은 학문적 추세 등에 의한 요구 등에 의해 기존 모집단위의 학제, 명칭, 주야 등을 변경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25.3.31.)

⑥ “모집단위 폐지”라 함은 해당 학과의 신입생을 더 이상 모집하지 않도록 차기 학년도 모집단위에서 삭제하는 경우를 말한다.

⑦ “평가지표”라 함은 모집단위의 역량이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정한 지표를 말한다.

⑧ “평가 산식”이라 함은 각 평가지표에 대한 모집단위별 평가점수를 계산하는 방식과 그 전제조건을 말한다.

제 2 장 정원조정 시기 및 절차

제 3 조(조정시기) ① 정원조정은 학과의 정원조정 신청이 있거나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원조정이 필요할 경우에 조정할 수 있다.

② 정원조정은 차기 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발표 이전에 정원조정을 완료하여야 한다.

제 4 조(절차) ① 정원조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원조정의 경우나 기타 대학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 제2호를 생략할 수 있다.

1. 학과정원조정 기본계획 수립
2. 학과정원조정 신청
3. <삭제(2025.3.31.)>

명지전문대학 규정 / 5-1-26 대학경쟁력강화를위한학과정원조정및신설·통폐합·변경·폐지규정

4. 학과정원조정위원회 심의
5. 교무위원회 심의
6. 대학평의원회 심의

② 정원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학과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구비하여 기획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학과정원조정은 제2호의 자료만 제출하고, 제3호의 자료는 제2조제4항의 경우에 한하여 제출한다.(개정 2025.3.31.)

1. 학과요청서 : 별지 제1호 서식(개정 2025.3.31.)
2. 학과회의록 : 별지 제2호 서식(개정 2017.10.25., 별지수정 2025.3.31.)
3. 대표(재학생, 졸업생, 학부모) 의견서 : 별지 제3호 서식(별지수정 2025.3.31.)
4. 검토확인서 : 별지 제4호 서식(별지수정 2025.3.31.)

③ 제2항에 따라 정원조정 신청을 접수한 기획실장은 이를 학과정원조정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개정 2020.04.13.)

제 4 조의 2(평가절차) ① 담당부서에서는 매 학년도별 학과성과평가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총장의 승인을 얻어 해당 학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2016.12.28., 개정 2017.10.25., 2020.04.13., 2025.3.31)

② 제1항의 평가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학과는 그 통보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담당부서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반드시 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개정 2025.3.31.)

③ 학과정원조정위원회는 이의 제기를 심사하여 최종 평가결과를 이의 신청한 학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7.10.25., 2025.3.31)

제 4 조의 3(감점사유) 학과평가 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감점사유가 되며, 점수는 발생 횟수 별로 감안한다.(신설 2016.12.28., 개정 2017.10.25)

1.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되는 사건이 발생한 경우(전체 배점의 5% 이내)
2. 소속 교원 간의 분쟁 등으로 원활한 수업진행이 어려운 경우(전체 배점의 5% 이내)
3. 소속 교원이 해교행위를 한 경우(전체 배점의 5% 이내)

제 3 장 학과정원조정위원회

제5조(구성) ① 학과의 정원조정을 위하여 학과정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학과정원조정위원회는 기획실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교무처장, 학생지원처장, 산학협력처장, 사무처장, 학부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5인 이내의 교·직원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16.12.28., 2018.08.27., 2018.12.10)

③ 당연직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26.3.23.)

제 6 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정원조정(개정 2017.10.25., 2025.3.31)
2. 정원조정의 시행방법에 관한 사항(개정 2025.3.31.)

명지전문대학 규정 / 5-1-26 대학경쟁력강화를위한학과정원조정및신설·통폐합·변경·폐지규정

3. 평가지표 및 평가산식에 관한 사항(개정 2025.3.31.)
4. 기타 학생정원조정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감점사유 등에 관한 사항 (호 추가 2017.10.25.)

제 7 조(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심의·의결한다.

③ 사안에 따라 정원조정 발의자가 참석하여 발의한 내용을 설명할 수 있다.

제 8 조(운영) 회의는 기획실 기획평가팀에서 주관하며, 간사는 담당 업무부서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8.08.27)

제 4 장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학과정원조정(개정 2025.3.31.)

제 9 조(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학과정원조정) ①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학과정원조정은 당해연도를 포함한 과거 3년 평가자료를 기준으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6.04.26., 2017.10.25., 2019.02.25., 2025.3.31)

② (신설 2016.04.26.), (항 삭제 2019.02.25)

제 10 조(모집단위 평가방법) ① 우리대학은 모집단위의 역량·성과와 그 개선도 및 대외적 경쟁력 등을 평가지표로 측정(이하 “학과성과평가”라 한다)하여 정원조정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평가지표는 「대학경쟁력강화를위한학과성과평가지침」에 의한다.(항 추가 2017.10.25. 개정 2020.04.13)

③ 최근 3년간의 학과성과평가 결과를 각각 당해연도의 50%, 전년도의 30%, 전전년도의 20%씩 반영한다. 단, 최근 2년간 또는 1년간만의 학과별 평가점수 산정이 필요한 경우 2년간의 평가시에는 당해연도 60%, 전년도 40%로 산정하고, 1년간만 평가시에는 당해연도 100%로 산정한다. 또한, 학과성과평가 산정 불가 항목이 있을 경우 나머지 항목의 배점 합계를 총평가만점의 비율로 환산하여 적용한다.(개정 2016.12.28., 2017.10.27., 2023.06.19)

④ 제3항에 따라 분류된 모집단위에 대한 학과정원조정은 [별표 1]과 같이 시행한다.(개정 2017.04.25., 2017.10.27., 2020.04.13., 2025.3.31)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신설된 모집단위는 그 편제가 완성되는 학년도까지 학과성과평가를 실시하는 하되 시행하지 아니한다.(개정 2016.12.28., 2017.10.27.)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부, 지자체 및 교육관련 국내·외 인정기구 등의 특정 사업(또는 특수목적)에 의한 모집단위의 정원조정은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신설 2020.04.13.)

제 11 조(입학정원 미충원 사유에 의한 정원조정) 입학정원을 충원하지 못하는 모집단위는 그 충원하지 못한 인원의 2배수에 해당하는 입학정원을 익년도에 감축할 수 있다. 다만, 신입학 추가합격 대상 인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정해진 미등록 총원 마감일 이후에 등록을 포기하여 충원하지 못한 인원은 감축하지 아니한다.(개정 2020.04.13)

명지전문대학 규정 / 5-1-26 대학경쟁력강화를위한학과정원조정및신설·통폐합·변경·폐지규정

제 12 조(학과성과평가 및 입학정원 미충원 사유에 의해 확보한 정원 배정 원칙) 제10조와 제 11조에 따라 확보한 입학정원은 신설·통폐합할 모집단위나 본교의 발전전략 등에 따라 육성할 모집단위에 배정하거나 정원감축 계획인원에 배정할 수 있다.(개정 2017.10.25.)

제 13 조 (조 삭제 2017.10.25.)

제 5 장 학과신설·통폐합·변경·폐지

제 13 조(학과 심사) 학과정원조정위원회는 학과 신설·통폐합·변경·폐지에 대하여 심사할 수 있다.(조 신설 2017.10.25.,개정 2025.3.31)

제 14 조(학과 신설) 학과정원조정위원회에서 다음 사항을 평가하여 100분의 80 이상을 획득한 경우 교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과 신설을 할 수 있다.(조 신설 2017.10.25.)

1. 신설학과의 교육 목표 (20%)
2. 학과 신설의 필요성 (20%)
3. 관련 분야 인력수요 전망 및 취업률 (60%)

제 15 조(학과 통폐합·변경) 학과정원조정위원회에서 다음 사항을 평가하여 100분의 80 이상을 획득한 경우 교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과 통폐합 또는 변경을 할 수 있다.(조 신설 2017.10.25.)

1. 통폐합·변경의 타당성 (30%)
2. 관련 분야 인력수요 전망 및 취업률 (70%)

제 16 조(학과 폐지)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학과는 교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폐지할 수 있다.

1. 학과성과평가 결과 2년 연속 [별표1]에 따른 E등급을 받은 학과
2. 3년 연속 학생 모집이 입학정원의 80% 미만인 학과

제 17 조(통폐합·변경·폐지 절차) ① 기획실에서 폐지 대상 학과에 폐과를 통보한 후, 교무처에 서는 신입생 모집을 중단한다.(조 신설 2017.10.25., 개정 2018.08.27)

② 폐과 대상 학과는 폐과를 통보받은 후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 학과 회의록을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교무처는 제2항의 학과 회의록을 제출받은 후 1학년 수강 신청을 폐쇄한다.

④ 재학생이 모두 졸업할 때까지 학과명을 유지하고 강의를 개설한다.

⑤ 통폐합·변경 절차는 제2항, 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하여 진행한다.

제 5 장 보 칙

제18조(교원의 신분보장 및 학생의 학습권보장) ① 모집단위의 정원조정 및 통폐합·폐지 등에

명지전문대학 규정 / 5-1-26 대학경쟁력강화를위한학과정원조정및신설·통폐합·변경·폐지규정

의해 조정되는 교원의 신분은 사립학교법 제56조 제1항에 의거하여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
되, 교원의 신분보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개정 2017.10.25.,
2023.01.20)

1. 신설학과 및 기존 학과 등으로의 전환배치 제안 및 기회 부여

2. 기존학과로의 전공전환 교육기회 부여

② 모집단위의 정원조정 및 통폐합·폐지 등에 의해 조정되는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신설 2023.01.20.)

1. 조정되는 학과의 소속 재적생은 유사학과로의 전과 기회 부여하며, 세부사항은 전과규정에 따
름

2. 조정되는 학과의 소속 재적생이 조정 전 학과의 교육과정 이수를 원하는 경우 학습 기회 부여
제 19 조(주무부서) 학과성과평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부서는 기획실 기획평가팀으로 한
다.(개정 2018.08.27)

제 20 조(운영세칙) 이 규정 이외의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일 이전의 평가점수 적용은 제10조에도 불구하고 학과별 평가점
수의 산정을 위해 최근 3년간의 학과성과평가의 확정된 평가점수를 적용하여 시행한다.

③ (평가유보) 학과통·폐합 등 구조조정에 참여한 학과는 구조조정 결과에 따른 성과 확인시까
지 정원조정을 위한 평가를 유보할 수 있다.(신설 2016.04.26.)

부 칙<2016.01.12. 부칙 개정>

이 규정은 2016년 4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6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7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7년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7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명지전문대학 규정 / 5-1-26 대학경쟁력강화를위한학과정원조정및신설·통폐합·변경·폐지규정

부 칙

이 규정은 2018년 8월 27일부터 시행하되, 2018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9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별표 개정>

이 규정은 2020년 4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3년 01월 20일부터 시행한다.(제18조제2항)

부 칙

이 규정은 2023년 6월 19일부터 시행한다.(제10조제3항)

부 칙

이 규정은 2025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제2항·제5항, 제4조제1항제3호, 제4조제2항, 제4조제2항제1호, 제4조의2제1항·제2항·제3항, 제6조제1호·제2호·제3호, 제4장, 제9조제1항, 제10조제4항, 제13조, 별지 제1호~제4호)

부 칙

이 규정은 2026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제5조제3항)

명지전문대학 규정 / 5-1-26 대학경쟁력강화를위한학과정원조정및신설·통폐합·변경·폐지규정

[별표 1] 학과성과평가 결과에 따른 정원조정 등의 시행 방법(개정 2016.12.28., 2017.04.25., 2020.04.13)

정원조정 등의 시행방법		
등급	평가순위	입학정원 조정
A	6(5)개학과	입학정원 추가 가능
B	6개학과	입학정원 자율 감축 또는 정원추가 가능
C	6개학과	입학정원 유지 : 단, 2회 연속 C등급 이하 시 3명 이하
D	6개학과	입학정원 감축 : 3명 이하(단, 2회 연속 D등급 이하 시 6명 이하)
E	6(5)개학과	입학정원 감축 : 5명 이하(단, 2회 연속 E등급 시 10명 이하)
※ 시행방법 원칙 1. 같은 등급 학과의 학생 수가 정수(5의 배수)로 배분되지 않을 시에는 낮은 평가점수에 해당하는 학과의 학생 수를 조정한다. 다만, 학과의 학생 정원 조정이 필요할 경우 기준 학생 수를 원칙적으로 40명 기준으로 하되, 학과 특성을 고려하여 적용할 수 있다. 2. 평가 결과의 순위에 의해 감축된 인원이 목표 감축 인원에 미달할 경우에는 C등급 이하 학과 인원을 조정하여 목표 인원에 맞게 감축한다. 3. 평가 결과의 순위에 의해 감축된 인원이 목표 감축 인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감축 대상학과 중 C등급 이하 학과부터 비율을 조정하여 목표에 맞게 감축한다.		

[별지 제1호 서식(개정 2025.3.31.)]

학과(신설, 통폐합, 변경) 요청서

1. 개요

가. 일반 요청(변경)사항

학과 명칭		계열구분	입학정원	시행시기
변경 전	변경 후			
(영문명)	(영문명)	○○계열	주간()명	

- 주) - 계열구분 : 공학, 인문사회, 예체능 중 기재
- 명칭은 영문명 병기

나. 정원조정 요청(변경)사항

학과정원 조정	
증원 신청	감축 신청
주간 (→)명 ○○명 증원	주간 (→)명 ○○명 감축

다. 교육과정 운영(변경)사항

구분	수업연한	학기운영	이수학점	수여학위명
변경 전	○년 ○월	○학기제	○○학점	(영문명)
변경 후	○년 ○월	○학기제	○○학점	(영문명)

- 주) - 수업연한 : 2년 이상 3년 이하(고등교육법 제48조)
- 학기운영 : 매 학년도 2학기제, 3학기제, 4학기제(고등교육법시행령 제10조)
- 이수학점 : 학위 취득에 필요한 학점
- 수여학위명 : 영문명 병기(고등교육법시행령 제60조)

2. [일반, 정원조정, 교육과정 운영]변경 요청 취지

가. 교육 목표

나. 필요성 및 타당성

다. 정원조정 요청분야의 국내·외 동향

※ 관련분야 인력수요 전망, 취업동향 및 관련통계, 타대학 사례 등

3. 운영계획

가. 총괄 운영계획

※ 전임교원 강의비율, 연간 운영예산 포함

나. 교과과정 편성계획 또는 개편(안) 대비표

※ 이수과목 편성표 첨부

다. 연간 학생정원 확보 방안 및 계획(미충원시의 대책 포함)

4. 행정사항

가. 교육부 정원조정 관련 지침 충족여부

※ 교원확보율, 학과 편제단위(증가 절대 불가) 등

나. 참여 전임교원 명단

연번	소속	직급	성명	학위	전공
1					
2					
3					
...					

[별지 제2호 서식(개정 2025.3.31.)]

학 과 회 의 록

일 시	20 년 월 일() 00:00 ~ 00:00					
장 소						
회 의 안 건						
회 의 내 용						
합 의 사 항						
이 건 사 항						
참 석 현 황	참석대상	명	참석자 확 인	소 속	직 명	성 명
	참 석 자	명				(인)
	불 참 자	명				(인)
불 참 현 황 (이 름)						(인)
						(인)
						(인)
					(인)	
작 성 자 ◦ 소속 : ○○○○과 ◦ 직위 : 학 과 장 ◦ 성 명 : ○○○ (인)						

[별지 제3호 서식(개정 2025.3.31.)]

대표(재학생) 의견서

※ 모집단위(학과) 통폐합 시 제출

20〇〇. 〇〇. 〇〇.

재학생 대 표 〇〇〇 (인)

재학생 대 표 〇〇〇 (인)

재학생 대 표 〇〇〇 (인)

[별지 제3호 서식(개정 2025.3.31.)]

대표(졸업생) 의견서

※ 모집단위(학과) 통폐합 시 제출

20〇〇. 〇〇. 〇〇.

졸업생 대 표 〇〇〇 (인)

졸업생 대 표 〇〇〇 (인)

[별지 제3호 서식(개정 2025.3.31.)]

대표(학부모) 의견서

※ 모집단위(학과) 통폐합 시 제출

20〇〇. 〇〇. 〇〇.

학부모 대 표 〇〇〇 (인)

학부모 대 표 〇〇〇 (인)

[별지 제4호 서식(개정 2025.3.31.)]

검 토 확 인 서

_____학부 _____과 학생정원조정계획에 대한 검토를 확인함.

20〇〇. 〇〇. 〇〇.

학 부 장	교 무 처 장